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2021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경 상 남 도**  
(감사위원회)



## 〈 목 차 〉

1. 홍보물 등 구입 예산편성 및 관리 부적정 .....	1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경고

제 목 홍보물 등 구입 예산편성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 치 기 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17. 11. 1.부터 2021. 4. 30.까지 ‘진흥원 홍보용 다이어리’ 등 81건 196,390천 원,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경남사랑상품권 구입’ 등 3건 2,600천 원의 홍보물, 기념품 및 상품권을 ‘행사·홍보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구입·배부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Ⅱ. 예산편성의 원칙<1.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함)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5% 이상 의무 절감,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에서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상품권 구매·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요구<sup>1)</sup>에 따라 전년도 상품권 구입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수량 예측을 통해 연초에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일괄발주 또는 반기별, 분기별 통합하여 구입하여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 시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큰 상품권을 선택하여 할인율만큼 예산절감을 하여야 하며, 상품권 구매 및 수불(배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사관련 홍보물 및 기관선물 구입은 행사·홍보비 예산과목에서 편성하면 아니 되고, 행사관련 기념품 등은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며, 홍보물품 및 상품권에 대한 수불(배부)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진흥원에서는 [표]와 같이 2017. 11. 1.부터 2021. 4. 30.까지 각종 사업별 홍보물·기념품(종이가방, 다이어리, 탁상시계, 우산 등) 81건, 196,390천 원 및 상품권 3건, 2,600천 원, 총 84건, 198,990천 원을 ‘행사·홍보비’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구입·배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전년도 구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고, 연초에 구입 계획을 수립한 후 통합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에도

1)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990호(13.9.27.)>

물품의 종류, 가격 등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행사·홍보비로 홍보물품 등 구입 현황

기 간	구입내역	구입목적	홍보물(기념품)		상품권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계			81	196,390	3	2,600
2017. 11. 1. ~ 2017. 12. 31.	○○○○○	진흥원 홍보, 행사 현장 배부	3	6,750		
2018년	○○○○○	진흥원 홍보, 사업 홍보, 행사용	3	5,646		
2019년	○○○○○	진흥원 홍보, 축제 용, 개소식 등	34	89,773		
2020년	○○○○○	진흥원 홍보, 워크 숍참석자, 이벤트 당첨자 지급	36	84,115	2	1,400
2021. 1. 1. ~ 2021. 4. 30.	○○○○○	진흥원 홍보, 전시회 기념품 등	5	10,106	1	1,200

[출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이 사안에 대하여 진흥원에서는 2017년 11월 23일 합천 청사로 이전한 이후 원거리에서 방문하신 내빈, 이해관계자 및 정책 고객 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 ○○ 등을 연례적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기에는 진흥원 전체 사업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진흥원에서 구입·배부한 ‘경남사랑상품권’은 도 ○○○○○○과에서 사용 협조 공문 보내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서, 이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발송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 출력 및 수기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 문제는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관련 교육 부족으로 인한 진흥원 전체적인 문제로, 앞으로 홍보물품의 구매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구입·집행하고 온라인 구매·배부를 포함한 전 홍보물품(상품권)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은**

홍보물 등의 구입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기관 전체의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 경고’ 처분하오니,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경고)